

영등포구의회  
제13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08. 5. 21 .



行 政 委 員 會

(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윤준용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사기진작은 물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함.

## ■ 제정내용

-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수여 등으로 예우할 수 있다(안 제2조)
- 새마을사업, 한마음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 등에 예산지원할 수 있다(안 제3조)
- 구청, 각 주민센터, 기타 구청 산하공공기관에는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안 제4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상 제정은 가능하다고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종로구에서 2006.11.3 제1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 되었으나 구청 측에서 재의 요구로 현재 유보되어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특정단체 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경우 사회단체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 운영 취지에 벗어나 건전재정 운영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은 물론 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등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에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5. 21.

보 고 자 : 김 병 욱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